

헌법 과 규약

최고집행평의회가 승인함 2020년 6월 19일
공군협회 - MiG 동맹 지부 #506

차 례

변경요약	6
제1조: 명칭	7
제2조: 목적	7
제3조: 제한	7
제4조: 회원	8
제1절. 자격	8
제2절. 회원비	8
제5조: 재무	8
제1절. 재무적 책임	8
제2절. 회계연도 및 운영연도	8
제3절. 소득원천	8
A. 특별 지정된 국가 및 차단된 사용자 목록(SDN)	8
제4절. 재무제표	8
제5절. 재무감사	8
제6절. 소유권	9
제7절. 서명확인	9
제6조: 조직	9
제1절. 통치방식	9
제2절. 제약	9

제3절. 지역 및 지리적 영역.....	9
제4절. 지부.....	9
A. 헌장.....	9
B. 회원.....	10
C. 투표.....	10
제7조: 지부 공무원들.....	10
제1절. 선거된 공무원들.....	10
Section 2. 임명된 공무원들.....	11
제3절. 공석.....	12
제8조: 지부 공무원들의 의무.....	12
제1절. 지부 회장.....	12
제2절. 지부의 부회장.....	12
제3절. 비서.....	12
제4절. 재무관.....	12
제5절. 명예회장.....	13
제6절. 미국-수석고문.....	13
제7절. 한국-수석고문.....	13
제8절. 회원 부회장.....	13
제9절. 통신 부회장.....	13
제10절. 항공우주교육 부회장.....	13
제11절. 공군장병 및 가족 프로그램 부회장.....	14
제12절. 수상 및 표창 부회장.....	14
제13절. 공동체동맹 부회장.....	14
제14절. 정부관계 부회장.....	14

제15절. 퇴역군인 업무 부회장	14
제16절. 리더쉽 개발 부회장.....	14
제9조: 최고집행평의회.....	15
제1절. 회원.....	15
제2절. 회의.....	15
제3절. 투표.....	15
제4절. 공석.....	15
제10조: 평의회 와 위원회	15
제1절. 권한이 있는 평의회 와 상임 위원회.....	15
제2절. 공인자문위원회.....	15
제3절. 회원.....	15
A. 권한이 있는 평의회 와 상임 위원회.....	15
B. 현지 평의회.....	16
C. 항공우주교육 심의회.....	16
D. 회원 위원회.....	16
E. 수상 및 표창 위원회.....	16
F. 개발 위원회.....	16
G. 재무 위원회.....	17
제4절. 회의.....	17
제5절. 보고서.....	17
제6절. 책임.....	17
제7절. 세출.....	17
제8절. 해임.....	17
제9절. 특별 위원회 또는 평의회.....	18

제11조: 징계	18
제1절. 지부 헌장 정지	18
제2절. 공무원	18
제3절. 회원	18
제4절. 절차	18
ARTICLE XII: 이해 상충 정책	18
1장. 목적.	18
2장. 정의.	19
A. 관심 있는 사람.	19
B. 재정적 이익.	19
3장. 절차.	19
A. 공개 의무.	19
B. 이해 충돌 여부 확인.	20
C. 이해 충돌 해결 절차.	20
D. 이해 충돌 정책 위반.	20
4장. 의사록.	20
5장. 보상.	21
6장. 연차 명세서.	21
7장. 주기적 리뷰.	21
8장. 외부 전문가의 활용.	22
제13조: 의회 기관	22
제14조: 헌법의 개정	22
제15조: 해산	22
제1절. 일반 조항.	22

제2절. 해산의 근거.....	23
부록 A: 이해 상충 또는 이중성 연례 진술	25
부록 B: 이해 상충 또는 이중성 공시 양식	26

변경요약

1. 헌법 과 규약에 변경요약이 추가되었다.
2. 대금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적으로 이용되는 공익사업이나 봉사에 대한 대금지불에 관한 성명이 제6조 제4절 A항 7호에 추가 되었다.
3. 제10조 제3절 에 B,C,D,E,F항들이 위원회 개별적 범위를 제한하고 적어도 한명의 투표성원이 필요된다는것이 추가 되었다.
4. 재무 위원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10조 제3절 G항에 추가 되었다.
5. 문서 X 추가II: 이해충돌 및 이해충돌 섹션.
6. 의회 권한을 제II조로 변경.
7. 헌법개정안을 제4조로 변경하였다.
8. 해산을 조항 XV로 변경.
9. 부록 A: 이해충돌 또는 이중성 연례 성명 추가
10. 부록 B: 이해충돌 또는 이중성 공시 양식 추가
11. A가 추가되었다. 특별 지정된 국가 및 차단된 사용자 목록(SDN)

헌법 과 규약

최고집행평의회가 승인함 2020년 5월 15일 공군협회 – MiG 동맹 지부 #506

제1조: 명칭

The 이지부의 명칭은 “Air Force Association – MiG Alley Chapter #506.”(공군협회 – MiG 동맹 지부 #506)이다.

제2조: 목적

공군협회는 자유국민으로서 우리가 단합할수 있는 어떤 조직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은

미 공군의 전체 성원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항공 우주 기술의 많은 진보에 의해 부과된 나라의 국방 책임을 지적하며,

회원들과 대중에게 자유국민의 안보와 인류의 개선에 그들이 공헌한다는것을 광범히 교육시키며,

미국과 자유세계의 안보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적 대비를 옹호하고 지지하는것이다.

제3조: 제한

이 지부는 민간적이며 당파적 원칙의 보급이나 공직 혹은 승진을 추구하는 사람의 입후보 촉진이나 기타 개인적 또는 상업적 이득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 지부는 연방세법 제501(c)(3)절에 따라 연방소득세가 면제 된 조직이나 미래의 어떤 연방세법의 해당조항에 의해 수행될수 없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협회가 해산되면 자산은 연방세법 제501(c)(3)절 또는 미래의 연방세법의 해당 절의 의미내에 속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면제목적으로 분배된다.

제4조: 회원

제1절. 자격

공군협회 혹은 지부의 목적을 지지하는 자는 이 문서와 기타 통치문서들에 명시된 제한사항들을 준수하고 해당한 회원비를 지불하면 회원이 될수 있다.

제2절. 회원비

개인 회원에 대한 연간 회원비는 협회가 요구하는대로 공군협회에 지불된다. 공동체 동맹을 위한 연간 회원비는 요구대로 그 지부에 지불된다. 다른 회원비는 필요하지 않다.

제5조: 재무

제1절. 재무적 책임

최고집행평의회는 재무관에 의하여 관리되는 본 지부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본 지부는 회계, 부채배상, 재정관리를 책임진다. 본 지부의 담당자들은 자산회계, 부채보상, 재무관련 및 운영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유지관리에 대한 개별 및 공동 책임을 진다.

제2절. 회계연도 및 운영연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운영연도는 10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다.

제3절. 소득원천

본 지부의 주요수입원천은 기부금이며 모금 혹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수익을 얻는다.

A. 특별 지정된 국가 및 차단된 사용자 목록(SDN)

출납원은 다음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 자산 관리 SDN 목록에 나열된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 파트너 회원, 후원, 기부를 수락하지 않는지 검증한다.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

제4절. 재무제표

재무부는 월별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매월 총회에서 검토를 위해 제시한다.

제5절. 재무감사

본 지부는 매년 공인회계법인이 감사하며 재무위원회가 추천하고 최고집행평의회가 승인한다. 감사보고서는 최고집행평의회의 각 위원에게 제공된다.

제6절. 소유권

본 지부의 회원들은 조직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 자산과 소득은 또한 직원에 대한 임금 및 급여 또는 기타 봉사제공에 대한 지불을 제외하고는 개별회원들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제7절. 서명확인

모든 수표는 재무관과 한명의 선출된 공무원이 공동서명한다.

제6조: 조직

제1절. 통치방식

본 지부는 총 회원 기구에 의해 관리되는데 그 기구는 필요한 조치를 위해 선출된 회장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최고집행평의회는 기구의 확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총 회원의 회의들 사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절. 제약

지부 회원들은 최고집행평의회와의 사전의 서면승인이 없이 협회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거나 제약하는 직접 및 간접적 효력을 내는 어떤 합의, 임대계약, 기타 약정을 체결할수 없다. 그들은 지부의 목적이나 정책에 위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다.

제3절. 지역 및 지리적 영역

본 지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련되어 있으며 조선반도를 포함하는 지리적영역을 담당한다.

제4절. 지부

A. 현장

(1) 본 지부는 공군명령34-233, 비공개 조직들과 육군규정210-22: 육군 설치부안에서 필요한 비공개 조직들의 권한에 속하는 오산 공군기지, 미 육군기지-험프리스, 군산공군기지에서 운영되는 국가 군사 협회이다.

(2) 본 지부는 연방정부에서 가질수 있는 공식 직책의 범위 밖의 사람들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급집단이며 설치사령관 또는 그의 피지정자의 서면허가만으로 운영된다.

(3) 지부 통치 문서는 공군협회와 그의 주 조직의 관리문서와 부합되지 않으며 공군협회 직원에

의해 주기적인 검토를 받는다.

(4) 본 지부는 국방부나 그의 어떤 산하요소도 아니며 정부의 지위도 없다.

(5) 본 지부는 극단주의 활동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것을 반대하거나 폭력적인 정부전복을 지지하지 않을것이다.

(6) 본 지부는 설치 및 정부(육군, 해군, 공군 등)에 대한 지부의 활동 또는 빛의 책임에서 손해가 생겨도 책임을 면제한다.

(7) 본 지부는 사용료가 부수적이지 않는한(공공료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청구 및 징수하는데 비용이 더 들지 않는한) 공과금을 정부(육군, 해군, 공군 등)에 상환할것이다

B. 회원

(1) 협회의 회원은 자동가입으로 특정 지부의 회원이 되거나 그 지부에 회원자격을 신청하였을때 회원으로 간주된다.

(2) 회원은 그들이 선택한 어떤 지부에 가입하거나 어떤 지부에도 가입하지 않을수도 있다. 회원은 한 지부이상 가입할수 없다. 협회의 성원이 되기전에는 어떤 지부에도 가입할수 없다.

(3) 본 지부는 고용 또는 회원정책에서 연령, 종교, 피부색, 출신국가, 장애, 민족 또는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C. 투표

(1) 모든 회원들은 완전한 투표권을 가진다. 회장은 공무원들의 선거나 동점을 제외하고는 투표할수 없다. 본 헌법 및 규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권이 있는 어떤 안을 통과시키려면 자격이 있는 회원들의 다수찬성이 필요하다

제7조: 지부 공무원들

제1절. 선거된 공무원들

A. 공무원들과 사무소의 임기. 본 지부의 공무원들은 회장, 부회장, 비서, 재무관이다. 비서급 공무원들과 재무관은 비서-재무부라는 단일 사무소로 통합될수 있다. 추가적인 공무원들은

2년마다 진행되는 선거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원들이 추천하거나 회장에 의하여 선출될수 있다. 공무원들은 2년마다 진행되는 선거에서 선출되며 최대 6개월동안 재임하며 그 다음 후임자가 선출될때까지 재임한다. 선거를 위해 정족수가 출석하지 않았을때에 선거는 서신이나 전자통신을 통해 수행된다.

B. 자격. 본 지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모든 개인회원, 및 지역사회공동체동맹성원들은 모든 공무원직에 선출될수 있다.

C. 공무원 교체. 모든 공무원들은 부적절하게 직무와 책임을 이행하거나 지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서술된 공무원/이사 윤리관례에 어긋나는 행위를 범하는 경우 최고집행평의회의 과반수 찬성에 따라 사무소에서 퇴임될수 있다.

(1) 어떤 공무원이 사임하거나 퇴임되거나 또는 그의 임기가 만료되기전에 사무소를 이탈하는 경우 공석은 이 조의 제3절에 따라 현재 6개월의 나머지가 채워진다.

(2) 사무소의 정상적인 임기가 끝나면 교체된 해당 공무원은 같은 사무소에서 다음기 임기를 선거 받을수 있다.

(3) 또한 교체된 해당 공무원은 다른사무소의 다음기 임기를 선거받을수 있다.

(4) 그렇지 장성급 회원자격이 없이는 공무원은 A항에 지적된 바와 같이 두개이상의 6개월임기를 사무소에서 연속적으로 맡을수 없다.

D. 임기시작. 공무원은 그들이 선거된 선거모임이 끝난 다음달 1일부터 후임자가 사무소에 취임할때까지 근무한다.

E. 선거모임이 취소될 경우의 선거. 선거가 취소될 경우 선거는 운영 및 절차 매뉴얼의 6조에 정의된대로 진행된다.

Section 2. 임명된 공무원들.

회장은 지부평의회의 승인에 따라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추가적인 평의회 성원이나 하위 공무원들을 임명할수 있다. 임명된 공무원은 회장 혹은 평의회의 다수찬성에 따라 퇴임될수 있다.

A. 권고된 공무원들. 명예회장, 미국-수석고문, 한국-수석고문, 회원 부회장, 통신 부회장, 항공우주교육 부회장, 공군장병 및 가족 프로그램 부회장, 수상 및 표창 부회장,

지역사회동맹 부회장, 부회장-정부관계, 부회장-퇴역군인문제, 부회장-리더쉽개발

제3절. 공석.

회장, 부회장, 비서 또는 재무관의 공석이 있는 경우 최고집행평의회가 다수 찬성으로 교체자를 선출하거나 서신이자 전자통신으로 교체자를 선출할때까지 나머지 세명이 그 직무를 맡는다.

제8조: 지부 공무원들의 의무

제1절. 지부 회장

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모든 문제, 특히 지부에 의하여 확립된 정책들과 목표들을 명백하게 하는데서 지부의 주요 대표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며

헌장, 운영 및 절차 매뉴얼, 작전지역 지도서, 그리고 최고집행평의회의 임무내에서 지부의 정책, 철학 및 전반적인 방향을 안내하며

지부의 관리 및 운영에서 내려지는 명령들에 전체 회원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며 장성급 회원모임과 최고집행평의회에서 의장을 맡는다.

제2절. 지부의 부회장

부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지부의 확립된 정책들과 목표들을 명백히 하며

회장의 부재시 장성급 회원모임 및 최고집행평의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회원 부회장의 부재시 회원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제3절. 비서

비서는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 회장 혹은 최고집행평의회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준비를 확고히 하고 지부의 진행사업의 정확하고 실직적인 기록을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4절. 재무관.

재무관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최고집행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부의 재무업무를 감독하며

재무위원회 의장직을 맡는다.

제5절.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주최국 공동체 그룹과 함께 지부를 대표한다.

제6절. 미국-수석고문

미국-수석고문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부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조언을 주어야 한다.

제7절. 한국-수석고문

한국-수석고문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부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 조언을 주어야 한다.

제8절. 회원 부회장

회원 부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최고집행평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부의 회원모집 업무를 감독하며
회원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제9절. 통신 부회장

통신 부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최고집행평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부의 출판업무를 감독하며
출판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제10절. 항공우주교육 부회장

항공우주교육 부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최고집행평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부의 교육업무를 감독하며

항공우주교육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제11절. 공군장병 및 가족 프로그램 부회장

공군장병 및 가족 프로그램 부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최고집행평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부의 재무관계를 감독하며
공군장병 및 군인가족 준비태세 센터, 무력지원단, 사기, 복지와 오락행사의 시설에로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12절. 수상 및 표창 부회장.

수상 및 표창 부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최고집행평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초판 프로그램들을 감독하며
수상 및 표창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제13절. 공동체동맹 부회장

공동체동맹 부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최고집행평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체 원조업무를 감독하며
개발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제14절. 정부관계 부회장

정부관계 부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최고집행평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부의 정부관련 업무를 감독한다.

제15절. 퇴역군인 업무 부회장

퇴역군인 업무 부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최고집행평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퇴역군인 프로그램들을 감독한다.

제16절. 리더십 개발 부회장.

리더십 개발 부회장은 권한을 행사하여 헌법, 교범 및 절차 매뉴얼과 작전지역 지도서에

따라 사무소에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하며
최고집행평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부의 인재관리를 감독하며
심사위원회와 리더십 개발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는다.

제9조: 최고집행평의회

제1절. 회원

총회사이에 회장은 회장, 비서, 재무관, 회원 부회장, 통신 부회장, 항공우주교육 부회장, 공군장병 및 가족 프로그램 부회장, 상 및 인식 부회장, 공동체동맹 부회장, 정부관계 부회장, 퇴역군인 업무 부회장, 리더십 개발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최고집행평의회를 통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명예회장, 미국-수석고문, 한국-수석고문은 투표권이 없는 회원이다.

제2절. 회의

전원 위원회는 회장이나 부회장, 투표권을 가진 임의의 3명의 회원들의 소집에 따라 열린다.

제3절. 투표

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가결로 이루어지며 회장의 수정 또는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서신 또는 전자 통신을 통해 진행되는 다수가결을 진행할수도 있다.

제4절. 공석

위원회의 공석은 원래의 임명기관에 의하여 임명된다.

제10조: 평의회 와 위원회

제1절. 권한이 있는 평의회 와 상임 위원회

회장의 관할하에 있는 지부의 위원회는 재무, 헌법(형성될 때), 출판 및 개발이다. 회원 위원회는 부회장의 관할하에 있는 지부의 한 위원회이며 현장위원회를 관할한다. 항공우주교육 부회장은 항공우주교육 심의회를 관할한다.

제2절. 공인자문위원회

공인자문위원회는 민간, 현역, 위급 공무원 그리고 퇴역/은퇴자로 구성한다.

제3절. 회원

A. 권한이 있는 평의회 와 상임 위원회

평의회와 위원회의 회원은 헌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한 임명기관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부의 모든 위원회들은 투표 부회장으로 된다.

B. 현지 평의회

MiG 동맹 지부 현지 평의회는 적어도 4명으로 구성한다. 이성원들은 부회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명되며 최고집행평의회에 의하여 확정된다. 부회장은 현지 평의회 의장으로서 그의 전반적인 방향을 안내하며 개발 프로그램들, 정책, 목표 및 지부의 현지활동을 위한 재정지침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현지 평의회는 항공우주교육 심의회 및 기타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소 위원회들을 적절하게 설립하고 배치할 수 있다.

C. 항공우주교육 심의회

항공우주교육 심의회는 의장과 최소 3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명은 지부의 투표성원이어야 한다. 이성원들은 회장과 협의하여 항공우주교육 부회장이 임명하고 최고집행평의회에 의하여 확정된다. 항공우주교육 부회장은 항공우주교육 심의회 의장으로서 전반적인 방향을 안내하며 협회의 교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 정책, 목표 및 재정지침을 개발할 책임이 있다. 항공우주교육 심의회는 현지 평의회 및 기타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소 위원회들을 적절하게 설립하고 배치 할 수 있다.

D. 회원 위원회

회원 위원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명은 지부의 투표성원이어야 한다. 회원 위원회는 재무 위원회 및 최고집행평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부의 사명을 지원할 기금을 확보 하여야 한다.

E. 수상 및 표창 위원회

수상 및 표창 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명은 지부의 투표성원 이어야 한다. 수상 및 표창 위원회는 재정위원회, 현지 위원회, 항공우주교육 심의회, 최고집행평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부의 사명을 지원할 기금을 확보 하여야 한다.

F. 개발 위원회

개발 위원회는 의장과 최소한 3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명은 지부의 투표성원 이어야 한다. 개발 위원회는 현지 위원회, 항공우주교육 심의회 및 최고집행평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부의 사명을 지원할 기금을 확보 하여야 한다.

G. 재무 위원회

재무 위원회는 의장과 최소 2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한명은 지부의 투표성원 이여야 한다. 재무 위원회는 현지 위원회, 항공우주교육 심의회 및 최고집행평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지부의 재정감독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작업에는 예산 및 재정계획, 재무보고, 내부통제와 책임정책의 작성 및 감시이다.

제4절. 회의

각 위원회 또는 평의회는 임명기관에 의해 그 회원들에게 통지한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제5절. 보고서

각 위원회나 평의회는 임명기관에 그 절차에 대한 서면기록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본은 지부의 비서가 보관한다.

제6절. 책임

각 위원회 또는 평의회는 운영 및 절차 매뉴얼과 임명기관에 의해 할당된 책임을 담당한다. 추자적인 현지 위원회는 현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현지 지도자와 회장사이에 직접적인 연계를 제공하며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지부의 현지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정책 권장사항들, 목표 및 재정 지침을 개발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항공우주교육 심의회는 본 지부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우수성을 확립할 책임이 있으며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본 지부의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정책, 목표 및 재정 지침을 개발할 권한이 있다. 개발 위원회는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이 지부의 자선 업무를 검토하고 권고할 책임이 있다. 현지 위원회, 항공우주교육 심의회에 위임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감독, 그리고 지부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최종적인 권한은 회장에게 있다.

제7절. 세출

위원회나 평의회는 임명기관에 의해 사전에 승인된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부가 책임을 지는 빛이나 금전적 의무를 지게할 권한이 없다.

제8절. 해임

위원회 혹은 평의회의 성원은 임명기관에 의해 해임될수 있다.

제9절. 특별 위원회 또는 평의회.

위원회 혹은 평의회는 회장 또는 최고집행평의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수 있다. 창설기관은 회원자격, 책임을 결정하고 그 위원회나 평의회를 위한 회의를 정해야 하며 적절한 때에 위원회 또는 평의회를 해산할수 있다.

제11조: 징계

재1절. 지부 헌장 정지

공군협회의 헌법을 위반하거나 공군협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거나 활동하지 않은 지부는 헌장을 정지 혹은 취소된다. 이 지부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설치 작업 권한을 철회할수 있는 설치 사령관의 권한을 인정한다.

제2절. 공무원

지부의 직무를 수행할수 없거나 위법 행위, 또는 지부 나 협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기타 행동이나 공무집행을 할수 없는 공무원은 사무서에서 해임된다.

제3절. 회원

부정행위 또는 지부 나 협회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는 행동을 범한 협회성원은 정지 또는 제명된다.

제4절. 절차

헌장폐지 또는 정지, 사무소에서 해임, 개별적 회원들의 정지 또는 추방에 관한 정의, 규칙 및 절차는 운영 및 절차 매뉴얼에 따른다.

ARTICLE XII: 이해 상충 정책

1장. 목적.

이해 상충 정책의 목적은 이 비과세 조직의 (Air Force Association – MiG Alley Chapter)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직은 조직의 관리나 임원의 사익에 이익이 되거나 초과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나 이 정책은 비영리 및 자선 단체에 적용되는 이해 상충을 지배하는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을 보완하지만 대체하지는 않는다.

2장. 정의.

A. 관심 있는 사람.

아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국장, 주임관, 또는 지배 이사회가 위임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구성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해관계인은 거래일 전 5년 동안 언제든지 (Air Force Association – MiG Alley Chapter) 의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B. 재정적 이익.

사업, 투자 또는 가족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다음을 가진 경우, 그 사람은 재정적 이익을 가진다.

- 1) 조직이 거래 또는 약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투자 지분
- 2) 조직과의 보상계약 또는 조직이 거래나 약정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과의 보상계약 또는 기타
- 3) 조직이 거래 또는 약정을 협상 중인 모든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잠재적 소유권 또는 투자 지분 또는 보상 약정. 보상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보수는 물론, 실속이 없는 선물이나 호의를 포함한다.

금전적 이익이 반드시 이해의 충돌인 것은 아니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재정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적절한 이사회나 위원회가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이해상충을 가질 수 있다.

3장. 절차.

A. 공개 의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실제적 또는 가능한 이해충돌과 관련하여 재무적 이익의 존재를 공개해야 하며 제안된 거래나 약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위임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이사 및

구성원에게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공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B. 이해 충돌 여부 확인.

재정적인 이익과 모든 중요한 사실을 공개한 후,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후 이해충돌의 결정이 논의되고 의결되는 동안 이사회 또는 위원회를 탈퇴한다. 이해충돌 여부를 나머지 이사회 또는 위원이 결정한다.

C. 이해 충돌 해결 절차.

- (1) 이해관계인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발표 후에는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거래 또는 약정의 논의 및 의결 시 퇴장하여야 한다.
- (2)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적절한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또는 위원회를 임명하여 제안된 거래 또는 약정에 대한 대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 (3) 실사를 한 후, 이사회나 위원회는 조직이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거래나 약정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 (4)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거래나 약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 지배 이사회나 위원회는 그 거래나 약정이 조직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것이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이사 과반수의 투표로 결정한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상기 결정에 따라 거래 또는 약정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D. 이해 충돌 정책 위반.

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가 위원이 실제 또는 가능한 이해충돌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신념의 근거를 위원에게 알려주고, 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사회는 회원의 답변을 들은 후, 그리고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를 한 후, 이사회가 위원에게 실제 또는 가능한 이해충돌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징계 및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장. 의사록.

이사회 및 이사회의 위임 권한을 가진 모든 위원회의 회의록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1) 공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한 사람의 이름은 실제 또는 가능한 이해충돌, 재정적 이해의 성격, 이해충돌의 존재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 그리고 이사회의 또는 위원회의 상호충돌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존재했다.
- (2) 거래나 약정에 관한 토론과 투표를 위해 참석한 사람의 이름, 제안된 거래나 약정에 대한 대안을 포함한 토론의 내용, 절차와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투표 기록.

5장. 보상.

- (1)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위원은 해당 위원의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결이 금지된다.
- (2) 보상 문제를 관할하는 위원회의 의결위원이 있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위원은 해당 위원의 보상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투표에서 제외된다.
- (3) 이사회의 의결 위원이나 관할권이 보상 문제를 포함하고 조직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어떤 위원회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보상에 관한 어떠한 위원회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6장. 연차 명세서.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각 국장, 주임원 및 위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당사자를 확약하는 성명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 (1) 이해 상충 정책의 사본을 받은 사실.
- (2) 정책을 읽고 이해한 사실.
- (3) 정책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사실.
- (4) 기구가 자비롭다는 것을 이해하고 연방 세금 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 개 이상의 면세 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에 주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실.

7장. 주기적 리뷰.

조직이 자선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면세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주기적 검토는 최소한 다음 주제를 포함해야

한다.

- (1) 보상 약정과 혜택이 합리적인지 여부, 역량 있는 조사 정보와 팔 길이 협상 결과에 근거한다.
- (2) 협력관계, 공동기업 및 관리조직과의 약정이 조직의 서면정책을 준수하고, 적절히 기록되고, 재화와 용역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나 지급, 추가적인 자선목적을 반영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거나, 허용할 수 없는 사적 편익 또는 초과급여거래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8장. 외부 전문가의 활용.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외부고문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할 필요는 없다. 외부 전문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인 검토가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의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

제13조: 의회 기관

Robert의 "Rules Of Order Newly Revised"에 포함된 규칙은 해당 사항이 적용 가능하고 헌법 및 해당 지부가 채택할수 있는 특별한 명령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해당 지부에 적용된다.

제14조: 헌법의 개정

본 헌법은 총회 회원 회의에서 대표들의 2/3의 찬성투표로 혹은 최고집행평의회에서 2/3의 찬성투표로 개정될수 있으나 최고집행평의회에서 채택한 개정안은 다음기 총회 회원 회의에서 대표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 또는 비준될수 있다.

제15조: 해산

제1절. 일반 조항.

지부의 해체는 설치 사령관 또는 피지명자에게 서면 통지가 전달된다. 그때 재무부에 포함된 자금은 미결제 부채, 부채 또는 의무를 충족시키는데 사용된다. 빚, 부채, 의무를 충족한후 남은 자금은 해산당시 해당 규정에 부합되는 자격의 남아있는 회원들의 다수 가결로 자선단체나 조직에 기부된다.

제2절. 해산의 근거.

지부는 회원들의 찬성투표, 설치사령관이나 피지명인의 지시에 의해 해산 될수 있다.

본 헌장은 검토/갱신 되었으며 2020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2019년 8월 23일 대체버전)

이 규약들은 2/3찬성으로 승인 된다.

서명

날자

챗터 프레지던트

공군 협회의 검토 및 승인 – 지역 회장.

서명

날자

태평양 특별 조교

공군협회-현지 협의회가 검토

서명

날자

AFA 야전 이사회 부의장

부록 A: 이해 상충 또는 이중성 연례 진술

_____ 달력 연도

이사, 임원 및 위원회 구성원

전자 메일로 요청, 서명, 날짜 및 반환된 모든 정보를 다음 주소로 제공하십시오:
afa.migalley.chapter@gmail.com

나, _____는(은), 아래 사항들을 단언합니다:

1. 이해충돌 정책 사본을 받아 읽었습니다;
2. 정책들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공개할 관련 관계가 없습니다
4. 나는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이 관련성이 있어, 나의 참여는 다음과 같다.
Air Force Association - MiG Alley Chapter #506 은 이해의 충돌 또는 이중성을 나타낼 수 있거나 인식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___ 공개할 관계가 없음

___ 첨부된 페이지에서 공개한 조직과 관계 맺기 (목록된 각 조직에 적용되는 모든 항목과 카테고리 #7의 경우, 직책 유지/직책 역할을 확인하십시오.)

이 정보는 미그골목지부 파일에 보관되어 회원, 예비회원, 문의자 등이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이 정보가 MiG Galley 지부의 법률 고문과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더 잘 이해한다.

나는 나의 공개 정보가 최신의 완전한지 확인하고 나의 관련 관계가 변경될 경우 일년 내내 공개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 나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이름: _____

직책: _____

사인: _____

날짜: _____

부록 B: 이해 상충 또는 이중성 공시 양식

다음 재무 또는 상업적 이해 관계 또는 기타 조직 관계를 공개할 때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본인, 배우자/파트너 및 부양가족.
- 지난 12개월 동안의 어떤 관계든, 그들이 아직 존재하든 아니든.
-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참여하는 모든 기업 활동에서 당신의 객관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리 회사, 비영리 단체 및/또는 정부 기관과의 관계.

공개해야 할 관계

Category	Description
1	제3자의 사례비를 포함한 상담료/호너리야, 컨설팅, 강연, 여행, 과학자문위원회 서비스, 법률 증언 또는 상담 또는 기타 목적의 선물 또는 현물 보상
2	의장국
3	주식/주식 옵션(또는 동일한 주식에 대한 권리), 비공시 거래 회사를 포함한다.
4	공개 거래되고 재정적으로 관련된 회사의 지분(또는 동일할 수 있는 권리).
5	로열티 수입 또는 미래 로열티를 받을 권리.
6	해당 활동의 합리적인 비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활동과 관련된 지급에 대한 비 로열티 지급 또는 권리.
7	임원, 수탁자, 이사 또는 기타 수탁자 역할(용역에 대한 보수 수령 여부)
8	상호 다각화된 자금을 제외한 소유권/파트너십/원칙.
9	재정적으로 관심이 있는 회사의 연구 보조금.
10	펠로우십 지원
11	프로그램의 급여 또는 직책 자금(부분 또는 전체) 또는 "현물" 지원.
12	영리법인의 특허권이나 기타 지적재산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13	기타 금융 혜택(지정하십시오):
14	기타 관계(지정하십시오)

Category (See chart)	Name of Organization	None	Modest (< \$10,000)	Significant (> \$10,000)
1, 3	GSK (example)		X	
7	ABC Company – Director (example)	X		

Important: If you have multiple “modest” relationships with a single organization which, when cumulated, total more than \$10,000, please include under “significant” in the last column above.